

이천시 서희문화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16· 5· 12 조례 제1233호
일부개정 2021· 6· 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탁월한 협상으로 나라를 구한 서희 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희 문화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희문화제(이하 “문화제”라 한다)란 서희 선생의 인물상과 역사적 활동상을 기려,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예술이 조화로운 행사로서 시민의 긍지와 애郷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의 구심점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예술행사 이다.

제3조(기능)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이천시서희문화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문화제의 기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2. 문화제(학술, 이벤트, 홍보)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
3. 문화제의 예산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 및 고문은 축제 및 문화관광·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지역 문화제 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문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제의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예산을 문화제 이외의 목적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11조(평가보고회 개최) 위원회는 문화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운영 능력, 개최 성과 등에 대한 2개월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5>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